

우리 나라의 國際法教育 與件

朴椿浩

(高麗大 法學科 教授)

國際法이 18세기말에 우리 나라에 傳來한 경위와 우리 나라에서의 국제법에 대한 認識度 및 우리 나라가 당면한 몇 가지 국제법 문제 등을 간추려 보고, 국제법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간단히 분석해 보았다.

I. 머리말

1956년 가을의 제2차 中東戰爭 때 영국과 프랑스는 수에즈운하 사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병력을 동원했다. 국제 항행에 있어서 동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운하의 통행 안전은 전 세계의 중대 관심사인데, 英·佛 양국은 우방국인 미국에게도 처음에는 일체 비밀에 붙이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런던과 빠리의 암호 교신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보고 무슨 중대한 謀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는 감지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결국 영·불 양국은 外交的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뜻을 이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맹렬한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중동사태는 그 후로도 계속 악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어서 무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후일에 이 수에즈운하 문제를 회상하면서 영국의 안토니·이튼 수상은 그의 회고록에 한마디 재미 있는 말을 남겼다. 즉 국제법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다 보면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이다. 수에즈 出兵을 논의할 때 외무성의 국제법 고문은 그것은 불법이니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외람됨을 무릅쓰고 필자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 덧붙인다. 귀국하여 國際法을 강의한 지가 2년도 채 못되는데, 弄半真半으로 “국제법도 법인가”하는 질문을 한두 번 받은 일이 있다. 물론 강의시간에 학생들로부터 받은 질문은 아니었다.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아직도 국제법이란 강대국들의 의사에 좌우되고 있다는 구시대의 관념 때문이고, 둘째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같은 테두리 안에서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도라도 국제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하여 애교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느 모로 보아도 국제법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은 높지 않다. 이제 여기에 그 이유를 대략 알아보고, 그러한 결과로 나타난 몇 가지 현상 및 국제관계가 갈수록 복잡해지며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앞으로의 대책을 간단히 생각해 보기로 한다.

II. 國際法에 대한 관심

우리 나라에 있어서 국제법에 대한 관심이 낮은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1. 歷史的 背景

서양의 기독교 문명권에서 나온 현대의 국제법은 먼저 清國을 거쳐서 우리나라와 일본에 들어왔다. 미국인 장로교 선교사 윌리암·마틴(William Martin, 중국이름은 丁趙良)은 1850년(清朝道光 30년)에 중국에 도착하여 미국 공사관 통역, 同文館 교수 등을 거쳐 北京대학 초대 총장이 되었는데, 1864년에는 헨리·휘튼(Henry Wheaton)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萬國公法」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출판했다.

이 책은 일본에는 1865년에 도입되었으나, 우리 나라에는 정확히 언제 들어왔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1880년대에 선비들이 읽고 있었다고 전한다. 물론 江華條約이 체결된 다음 해인 1877년에 이미 조르즈·프렌드리히·드·마르탱(George Fredrich de Martin)이 쓴 *Guide Diplomatique*의 중국어 역판이 일본을 통하여 소개되었다고 하나, 국제법이 도입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위의 「萬國公法」이 더 중요한 문헌이었다.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이 서구세력의 駐砲外交의 압력 아래 국제법이라는 美名으로 체결한 거의 모든 조약은 한갓 不平等條約에 불과했다. 물론 중·일 양국의 뒤를 이어 구한국이 체결한 여러 조약 역시 마찬가지였다.

결과적으로 韓·中·日 3국은 국제법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不信的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후구사와·유기찌(福澤諭吉)는 “100권의 국제법 책과 많은 우호조약이라도

一門의 大砲만 못하다”고 했는데, 우리 나라의 金玉均과 朴泳孝는 이 후구사와의 信奉者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한·중·일 3국에서는 국제법만 믿고 있다가는 오히려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굳어졌던 것이다.

2. 地理的 環境

韓·中·日 3국은 본래 지리적으로 외부세계와 격리되어 있어서 19세기의 전반까지는 ‘외국’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中華圈外의 모든 것은 일단 ‘相異’의 기준보다 ‘善惡’의 기준으로 대하려는 성향이 나타났다. 즉 ‘외국’적인 것에 접할 기회가 제약되어 있어서 자기의 것과 相異한 것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 이 점은 상이한 의견은 곧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아가서는 우리 편이 아니면 곧 반대하는 편으로 속단하여, 무관심하거나 무고한 제 3자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동양의 생활 감정파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원래 동양하고는 이질적인 기독교 문명의 베두리 안에서 서구제국이 상호간의 평등한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國際法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다. 더구나 이러한 국제법이 초기의 도입 과정에서 한갓 西勢東漸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몸소 쓰라린 경험을 한 동양 3국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다. 이 점은 위의 「萬國公法」이 중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清國에 와 있던 일부 서양인들의 웃지 못할 반응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어느 프랑스인 외교관은 이제 중국인들이 국제법을 알게 되었으니 큰일났다고 마틴을 비난했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그 책이야말로 서양인들은 모든 것을 힘으로만 짜지려 한다는 인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친양하는 쪽도 있었다고 한다.

3. 國際的 背景

위와 같은 역사적·지리적 환경 외에, 현재 國際政治의 중심은 서방측에 있다. 따라서 국제 문제에 관한 우리의 감각은 솔직히 말해서 ‘수입된’ 감각이다. 이것은 국제문제를 규제하는 국제법도 역시 일차적으로는 ‘수입된’ 것임을

듯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수동적인 경우가 있고, 국제법의 무기력함을 피부에 느끼기도 한다.

어느 국제법 학자는 꼭같은 국제법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가 강대국을 변호할 경우와 약소국을 변호할 경우에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을 했다. 너무도 노골적인 의견일지는 몰라도 국제법적 현실을 충실히 표현한 것이다.

어느 신생약소국 언론인은 이러한 익살을 부렸다고 한다. 즉 작은 신생국이 국제적인 관심을 끌어서 자기의 존재를 알리려면 무슨 커다란 사고를 내야 하는데, 강대국의 공관이나 항공사의 시설을 파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우리는 원래부터 이러한 구차한 짓을 해야 할 단계는 거치지 않았다. 반면에 위에 말한 바로 19세기 말에 국제법이 들어오던 과정에서 첫번째 불쾌한 경험을 했는데, 그 후에 일본이 서구 세력으로부터 받은 불평등조약의 수모를 蒙昧한 우리에게 시도했을 때 두번째로 불쾌한 경험을 했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볼 때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결코 고무적일 수 없었다.

4. 制度的인 與件

우리 나라에서는 국제법이 외무고시를 제외한 사법·행정시험의 必須科目에서 제외된 지가 오래되어, 각 법과대학에 있어서의 국제법교육은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법은 졸업에 필요 한 학점을 채우는 데 필요해서 수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말 國際法學을 공부하기 위한 경우는 결코 많지 않다. 이와 같은 현상에는 주로 다음의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국제법의 必要性에 관한 인식 때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국제법이란 외교관을 지원하는 사람이나 혹은 다른 제간이 없어서 그저 국제법 선생이나 할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익살과 풍자로 이름난 영국의 문인 베나드·쇼의 말이 생각난다. 그는 선생이라는 직업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무슨 일이든 할 줄 아는 자는 자기가 직접 하고, 할 줄 모르는 자는 가르쳐겠다고 나

선다”고 했다. 하기야 세계적으로 이름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도 한때 증권에 투자했다가 폭삭 실패한 일이 있었다고 전한다. 이러한 예는 멀리 옛날의 영국에서까지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우리의 주변에도 있을지 모른다.

둘째는 법과대학에 입학하면 대개 일단은 司法·行政·外務考試 등의 시험에 뜻을 두는데, 이러한 시험의 준비과정에서 必須科目이 아닌 국제법에는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국제법에 한한 것이 아니고 시험과 직접 관계가 없는 모든 ‘사치스러운’ 과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여전 하에서는 법과대학의 교육이 法學教育보다는 法技術教育으로 치우쳐 버릴 위협을 내포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법률가를 양성하는 제도 문제로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 이지 법학교육이라는 한 가지 측면에서만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外國語學習環境

국제법의 학습·연구에 있어서는 최소한 몇 가지 외국어 실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국제법이라는 특수한 과목의 성질에 박차어 자명한 일이므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 점은 우리나라가 국제경쟁 상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게 되어 외국인들이 국제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말을 배워야 할 때까지는 우리로서는 하나의 숙명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지리적 환경이나 국제적 배경으로 보아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은 몹시 불편하다. 즉 외국어를 습관으로 배워 이힐 수 없으므로 하나의 知識으로 배워야 하는데, 이것은 가장 비능률적인 방법이다.

서양의 국제법 학자들 중에는 자기의 연구에 필요한 4,5개 외국어를 불편 없이 구사하는 예가 신기하지 않다. 이것은 각자의 노력파도 관계가 있으나 좀더 일반적인 이유는 그네들이 쉽게 몇 개의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스위스나 화란에서는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는 이미 최소한 2,3개의 외국어를 그것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물론

그 정도를 배워 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유도 있으나, 외국어를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우리에게는 매우 부러운 일이다.

UN의 공식용어는 아랍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 등 여섯 가지이다. 오늘날 우리는 國際會議의 時代에 살고 있다. 그런데 UN이나 다른 주요 국제기구 그리고 수시로 열리는 그렇게도 많은 국제회의에서 주로 쓰이는 말은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아랍어의 순서이고, 중국어와 러시아어는 주로 자기 대표들만이 쓰고 있다.

국제회의에서 영어·프랑스어권의 신생국들의 대표들이 언어의 장벽을 느끼지 않는 것을 보면 자못 부럽기도 하다. 한편 공용어권 밖에서 온 대표들이 각자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때 언어의 장벽에 부딪쳐 혈압만 오르락 내리락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보면 약간 안타깝기도 하다. 우리는 배워 놓은 일본말이 있어도 국제회의에서 별로 쓸모가 없으니, ‘이왕 종살이 할 팔자라면 큰집 종살이를 하라’는 허탈한 속담이 연상되기도 한다.

III. 몇 가지 當面問題

위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국제법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 높지 못한 이유를 필자 나름대로 다섯 가지쯤 생각해 보았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현실 문제를 몇 가지 간추려 본다.

1. 南·北韓關係

우리는 남·북한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근 40년간이나 살아 오고 있으며, 그 중에서 30여 년간은 休戰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동·서독의 예에 따라서 남·북한이 UN에 同時加入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특유의 몇 가지 문제는 국제법상 종전의 이론만으로나 교과서의 태두리 안에서는 풀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좀더 진지하고 꾸준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러한 몇 가지 문제는 우리만

이 갖고 있는 특수한 것에 속하기 때문이다.

2. 海洋法·海事法問題

우리는 혼히 삼면이 바다라는 말을 들려 쓴다. 그러나 역사상 우리 민족은 바다를 이용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는 자랑할 만한 기록은 없다. 그런데 이제 인류는 바야흐로 해양개발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 UN은 1967년에 시작하여 1982년까지 15년간의 끈질긴 작업으로 사상 최초로 종합적인 海洋法協約을 채택했다.

우리는 1952년에 平和線을 선포하여 일본과 14년간 악몽같은 어업 분쟁을 한 바 있다. 1960년대에는 公海自由의 원칙만 믿고 북태평양에 나갔다가 한때 미국하고도 속을 상했었는데, 1977년에 소위 200해리 어업수역이 나타나자 뜻거 나오고 말았다. 이제는 남극에까지 가서 새우를 잡아 보기도 하나 아직은 우리의 원양어업에 별다른 큰曙光은 보이지 않는다.

礦物資源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1969년 아래 황·동지나해의 대륙붕 석유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다. 그 등안 일·중공 양국과 대륙붕 경계 문제로 심심치 않게 옥신각신해 왔으나, 아직은 그렇게도 바라는 석유개발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海運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이것은 바다에 관한 국제법이 公法·私法을 막론하고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러나 이 분야에도 과연 열마만큼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지도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만하다.

3. 經濟法 問題

위에 말한 대로 우리의 경제가 대외무역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법 분야에서 우리에게는 경제법 역시 지극히 중요하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이 國際經濟法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그러한 발전 자체만을 파악하는 것마저 힘든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법은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해서 국제법의 한 분야라고만 간단히 취급할 수도 없다.

이 국제경제법은 위의 전쟁법이나 해양법·해

사법과는 달리 우리의 經濟的 存立과 직접 관계 되는 것이다. 세계는 이제 人口問題와 資源問題를 안고 있어서, 東·西, 南·北, 南·南 등 간의 생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기 마련이다. 근래에 우리 나라에서도 경제법에 대한 관심은 현저하게 높아졌으나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점을 좀더 정확하게 인식할 때가 온 것 같다.

IV. 結 語

우리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나, 반면 작은 나라도 아니다. 따라서 무단히 큰 나라의 흡내를 넣 필요도 없고 작은 나라라고 스스로 위축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우리보다 큰 나라이면서 못 사는 나라와 우리보다 작으면서 잘사는 나라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양자의 실패와 성공을 거울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전국 당초부터 국제법의 신세를 많이 졌다. 예를 들어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는 여러 우방국들이 우리 나라를 국제법상 승인을 했고 UN 자체도 우리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물론 그해 우리 나라 최초의 총선에서도 UN 감시하에 실시되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시작된 우리 나라의 국제관계, 특히 UN 및 그 산하기관들의 관계는 다른 어느 신생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우리 나라와 국제법과의 특수한 인연을 말해 준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이미 약 160개의 독립국가가 있는데, 남태평양에 산재한 여러 자치령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UN 회원국으로 등장하리라고 한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의 수가 계속 늘어날 뿐 아니라 신생국가들의 의식 수준 역시 높아가고 있어서 국제관계는 갈수록 다

양해지고 복잡해지게 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국제관계를 규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역을 맡는 것이 국제법이다.

우리는 흔히 國際化時代란 말을 즐겨 쓰는데, 이러한 국제시대에 국제법이란 외교관을 할 사람이나 국제법 선생을 할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일 수는 없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 보자. 짱주에 흥기로 암달리상을 살해한 자가 그날로 제 나라에 도피했는데,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협정이 없으니 범인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또 1983년은 우리를 국제법 문제의 도가니에 떨어뜨렸다. 비무장 민항기를 격추하여 269명의 生靈을 수중에 생네장하는 강대국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를 썼고, 國交가 없는 나라의 민항기가 납치되어 와서 생각지도 않던 국제법 문제를 안겨 주었는가 하면, 남의 나라에까지 가서 동족을 폭사하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눈하나 깜작하지 않는 족속을 보았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국제법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내법과 국제법은 별개의 존재가 되는 시대는 지난지 오래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완하는 단체도 지났다. 서로가 피차간에 침투하고 통합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국제법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국제법의 존재를 피부에 느끼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도 법인가’ 하는 질문은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인가.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데’ 하는 말과 상통한다. 국제법이란 멀리 오묘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인식이 좀더 일반화되길 바라는 마음이 아쉽다. *